

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95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7.

제 출 자 : 삼 척 시 장

1. 제안이유

- '95. 7. 1부터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
 - 지금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던 부시장 정원이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선출된 민선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됨에 따 — 시 본청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 1인을 삭감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본청 일반직 지방공무원 1명 정원 삭감.

삼척시 조례 제 호

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사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중 1호 본청 “380명”을 “379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삼척시의 본 청,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
1. 본 청 : 380명	1. 본청 : 379명
2. 의회사무국 : 15명	2. <현행과 같음>
3. 직속기관 : 100명	3. < " >
4. 출장소 : 30명	4. < " >
5. 사업소 : 72명	5. < " >
6. 읍면동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 : 365명	6. < " >